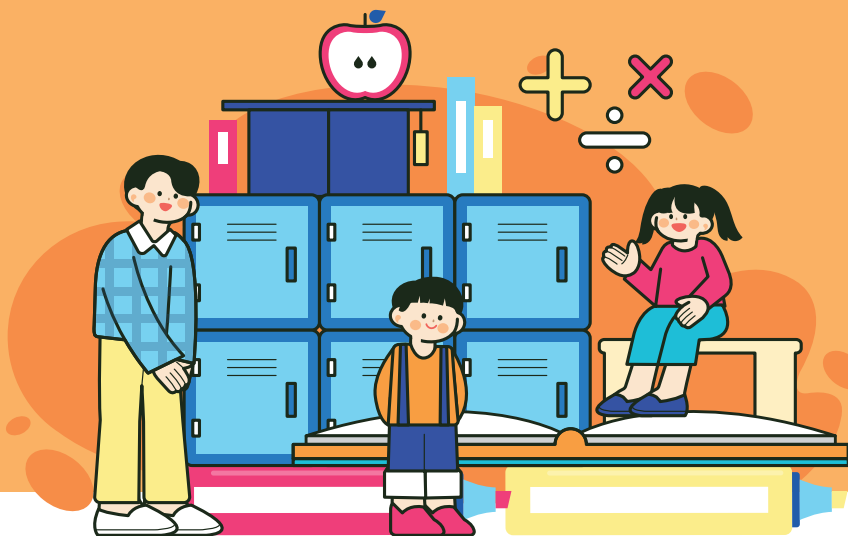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 운영

훑아보기



‘훑아보다’란?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우리말입니다.



교육부

contents

I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3
II	유치원 교육과정	13
III	기본 교육과정	19
IV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31
V	개별화교육계획과 순회교육	39
VI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43
VII	일상생활 활동	49
VIII	고교학점제	57
IX	학교 교육과정 지원	65

I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방향

디지털 대전환, 기후·생태환경, 인구 구조 변화의 가속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교육 내외적 변화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습니다.

-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마련
-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반영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강화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문서 가독성과 문서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친절하고 활용도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문서 체제를 개선했습니다.

- 문서 체제 재구조화: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
- 편성 → 설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한 '편성'이 아닌 학생이 가지게 되는 학습 경험을 위한 교사의 '설계'로 전환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목표	II.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구성의 중점 2. 편성·운영 3. 교수·학습 4. 평가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교수·학습 3.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II.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구성의 중점 2. 편성·운영 3. 교수·학습 4. 평가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2. 교수·학습 3.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VI. 학교 교육과정 평가 1. 평가 2.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유치원 교육과정 변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의 교육과정 연계 지도 및 놀이 참여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 총론 內 추가된 근거 조항

- 1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의 경우 교육적 요구에 따른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신설**
- 2 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운동, 적응행동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발달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개선**
- 3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의 경우 교육적 요구에 따른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신설**
- 4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유아의 배치 환경,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개선**
- 5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 등의 일과 내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고, 유아의 놀이 참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설**
- 6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개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가정 연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선**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변화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기본 교육과정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 총론 내 근거

구분	총론 내 근거 지침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다.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선 자.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요한 기초 학습, 생활 기능, 진로 및 직업 적응 등의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신설
기본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영역 신설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상생활 활동은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신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학점)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도 시수(학점) 증감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 확대

-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음.
- [고등학교 중점학교 운영] 교육과정을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로 운영하는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함.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일반학교]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 총론 내 추가된 근거 조항 **신설**

-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이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 총론 내 추가된 근거 조항

- 1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이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 활동을 병행하거나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점자 및 수어 신설] 시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점자 및 수어를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 총론 內 추가된 근거 조항

- 1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 시수를 활용하여,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 2 고등학교: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점자'와 '수어'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순회교육] 순회교육 대상자의 배치 환경,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순회교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 총론 內 추가된 근거 조항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되, 순회교육 대상자의 배치 환경,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개선

[특수교육 전문 교과 재구조화] 일반(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과목: 사회적응 **신설**
-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전환된 과목: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구분	과목			
직업·생활 개선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	기초작업기술	기초작업기술II
	정보처리	농생명	사무지원	대인서비스
	외식서비스	직업현장실습	직업과 자립	사회적응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의료 (시각장애학교)	해부·생리	병리	이료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이료실기실습		

●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통합교육실행 및 개선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침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원 영역	내용
의사소통 지원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학습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행동 지원	정서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으로 교육활동 중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해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도와 형태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보조공학 지원	학습, 정보 습득,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 신체 특정 부위 작동, 이동, 기타 다양한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때 이를 지원해 주는 공학적이거나 도구적인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 활동에 불편함이나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지원 관련 지침을 신설하였습니다.

❖ 총론 內 추가된 근거 조항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고 전문적인 협력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다양한 통합교육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 총론 內 추가된 근거 조항 신설

- ①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② 특수학교가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II



유치원 교육과정

Q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누리 과정을 근간으로 유아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과 체계를 강조하면서,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계획이 연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감각, 운동, 이동, 가족지원, 행동 지원 등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애가 심한 유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Q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 간의 연계 운영 강조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놀이 참여 지원
- 장애가 심한 유아의 교육과정 참여와 교육적 요구 반영
- 개별화교육계획의 질적 운영과 가정 연계



Q 유아가 놀이하는 상황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유아가 놀이하는 상황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놀이 중심 삽입 교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놀이 중심 삽입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놀이 흐름 속에서 개별화교육목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 장면을 삽입하는 것으로, 유아의 놀이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Q '놀이 중심 삽입 교수'의 실행 절차 참고

[놀이 중심 삽입 교수 실행 절차]	
1. 개별화교육계획 교수 목표 수립	✓ 놀이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 목표 수립
↓	
2. 삽입 교수 기회 확인	✓ 놀이 맥락에서 지도 가능한 기회를 확인
↓	
3. 놀이 중심 삽입 교수 계획	✓ 놀이 흐름에 따라 삽입 교수를 실시할 구체적인 방법 수립
↓	
4. 놀이 중심 삽입 교수 실행	✓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삽입 교수 실행
↓	
5. 관찰 및 평가	✓ 놀이 흐름에 맞춰 관찰하고 유아의 경험과 배움을 확인

Q 유아 중심 놀이에서 참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유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참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참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놀이 참여 지원 계획은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하여 다음 놀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놀이 참여 지원의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놀이 참여 진단과 교육 과정 수정	놀이 참여에 필요한 행동 및 기술 교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원리에 따라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놀이 참여 특성과 환경적 요소 등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놀이 참여 지원에 도움이 될 요소 파악	→ 놀이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지원

-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
- 유아의 놀이 참여를 위해 교사는 놀이 관찰을 통해 유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참여 지원안을 개발함. 이후 놀이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는 민감한 관찰자, 유연한 계획자, 협력적 상대자 등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Q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는 어떤 유아로 생각해야 하나요?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는 법에서 지칭하는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장애를 갖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할 수 있고,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 중 전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

-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는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의미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의 교육과정 운영 사항은 유치원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중 어느 한 가지 장애가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심할 수도 있고, 지적장애와 시각장애의 두 가지 장애로 인해 일과 참여에 지원인력과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

Q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1항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시행령 [별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나. 시청각장애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기본 교육과정

Q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서만 편성·운영할 수 있나요?

☑ 네,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특수학교에서만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Q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함
-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름

Q 특수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일부 학급 또는 학년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과정 병행 편성·운영 취지 및 예시

- 특수학교의 경우 하나의 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편성 가능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함
- 교육과정 유형별 편성 단위는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급 또는 학년이 될 것이므로 관련 세부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결정함
- **예**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학급(학년) 교육과정으로 기본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학점)으로 병행하여 편성·운영

Q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경우 성취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그리고 해당 학년군 교육과정을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경우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 교과별 성취기준은 해당 학년군의 성취기준을 따르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 연령을 고려하여 관련성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Q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 대체 방법 및 참고 사항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면 해당 학년군의 교과 내용 외에 다른 학년군의 교과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 타 학년군의 교과용 도서를 연계하거나 성취기준과 관련된 경험 중심 활동으로 교육 내용을 조정함
- 학생의 생활연령 및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함
-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학습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함

Q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중 한 영역에서 수업 시수(학점)를 감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수(학점)를 다른 영역에서 늘립니다. 단,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지나친 증배나 감축 운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영역 간 시수(학점) 증감 시 유의 사항

- 교과(군)별 수업 시수(학점)를 증감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
 - ※ 교과(군)의 성취기준을 삭제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며, 교과 교육과정 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교과 내용을 통합하는 등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체육 및 문화예술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는 기준 수업 시수(학점)를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축은 불가함

Q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등 간 50% 범위 내 편성 시 시수 증감 범위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시수 증감		학교자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초등학교 5~6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군)	국어	340	±170	170~510
	사회	204	±102	102~306
	수학	204	±102	102~306
	과학/실과	272	±136	136~408
	체육	170	+85	170~255
	예술(음악/미술)	238	+119	238~357
	소계	1,428	-510~+714	918~2,14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408	±204	204~612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340	±170	170~510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2,176		2,176

- 예 초등학교 5-6학년군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에 배당된 시수를 50% 증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교과(군)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을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교과 시수를 50%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수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으로 확대하여 편성·운영함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시수 증감		학교자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중학교 1~3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군)	국어	374	±187	187~561
	사회	374	±187	187~561
	수학	306	±153	153~459
	과학/실과	204	±102	102~306
	진로와 직업	476	±238	238~714
	체육	272	+136	272~408
	예술(음악/미술)	238	+119	238~357
	선택	170	±85	85~255
소계		2,414	-952~+1,207	1,462~3,621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408	±204	204~612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544	±272	272~816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3,366		3,366

- 예 중학교 1-3학년군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에 배당된 시수를 50% 증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일상생활 활동 시수를 감축하여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시간으로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상생활 활동보다 추가적인 교과 지도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 활동 시수를 50%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수를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하여 편성·운영함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학점 증감		학교자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고등학교 1~3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 (군)	국어	20	±10	10~30
	사회	18	±9	9~27
	수학	14	±7	7~21
	과학/실과	8	±4	4~12
	진로와 직업	36	±18	18~54
	체육	14	+7	14~21
	예술(음악/미술)	14	+7	14~21
	선택	10	±5	5~15
	소계	134	-53~+67	81~201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자치 활동	26	±13	13~39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32	±16	16~48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192		192

- 예 고등학교 1~3학년군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에 배당된 학점을 50% 증감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을 감축하여 교과(군)와 일상생활 활동으로 시간으로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 보다 추가적인 교과 지도와 일상생활 활동이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을 50%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과(군) 및 일상생활 활동으로 확대하여 편성·운영함



Q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증감하여 편성한 후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해 추가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증감하여 편성하였다면, 추가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Q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시수(학점) 증감은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함

-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2)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두 가지 지침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Q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시수(학점) 조정 시 유의 사항

- 학교 단위 교육과정 영역 간 증감 여부와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 학교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수(학점)를 조정함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Q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시 시수 증감 범위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시수 증감		학교자율□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초등학교 5~6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 (군)	국어	340	-170	170~340
	사회	204	-102	102~204
	수학	204	-102	102~204
	과학/실과	272	-136	136~272
	체육	170	-85	85~170
	예술(음악/미술)	238	-119	119~238
	소계	1,428	-714	714~1,428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408	408
일상생활 활동		340	+714	340~1,05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2,176		2,176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시수 증감		학교자율□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중학교 1~3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 (군)	국어	374	-187	187~374
	사회	374	-187	187~374
	수학	306	-153	153~306
	과학/실과	204	-102	102~204
	진로와 직업	476	-238	238~476
	체육	272	-136	136~272
	예술(음악/미술)	238	-119	119~238
	선택	170	-85	85~170
	소계	2,414	-1,207	1,207~2,414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자치 활동	408		408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544	+1,207	544~1,751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3,366	3,366	3,366

적용 교육과정		적용 대상		2000학년도 입학생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기준 학점 증감		학교자율□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구 분		고등학교 1~3학년		
		기준 수업 시수	시수 증감 범위	편성 가능 시수
교과 (군)	국어	20	-10	10~20
	사회	18	-9	9~18
	수학	14	-7	7~14
	과학/실과	8	-4	4~8
	진로와 직업	36	-18	18~36
	체육	14	-7	7~14
	예술(음악/미술)	14	-7	7~14
	선택	10	-5	5~10
	소계	134	-67	67~134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자치 활동	26		26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32	+67	32~99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최소 수업 시수)		192		192

Q 2015 개정 기본 교육과정에서 1~2학년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64시간 포함하여 지도했던 '안전한 생활'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지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 초등 1~2학년군 창의적 체험활동이 336시간에서 272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안전한 생활 64시간이 통합교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단, 안전한 생활 64시간을 산술적으로 분배하여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의 내용 요소가 통합교과 수업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안전한 생활' 지도 시 참고 사항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안전한 생활'의 24개 내용 요소를 통합교과 교육 과정에 모두 반영함
-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 과정에 1개씩의 별도의 성취기준을 제시함

[2바생01-04] 일상생활에서 나의 안전을 항상 실천한다.
[2슬생01-06]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익힌다.
[2즐생01-07] 신체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한다.

- 특정 단위이나 시기에만 안전교육 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교과의 여러 성취 기준에 안전교육 내용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실천·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개선함

Q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어떤 학생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법에서 지칭하는 '중도중복(重度重複)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장애를 갖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할 수 있고,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학업과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 학습 및 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함
- 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중 어느 한 가지 장애가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심할 수도 있고, 자폐성장애와 저시력 두 가지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수행 시 지원인력의 전반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군)별 50%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름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Q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1항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시행령 [별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IV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Q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을 따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공통 교육과정 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Q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함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함

Q 특수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하나요?

✔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참석을 권장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역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
- 학교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경우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는 무엇인가요?

✔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제작한 교육용 자료를 말합니다.

Q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 활용 사례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작한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부의 에듀넷·티-클리어,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의 교수·학습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 공동체, 연구회 등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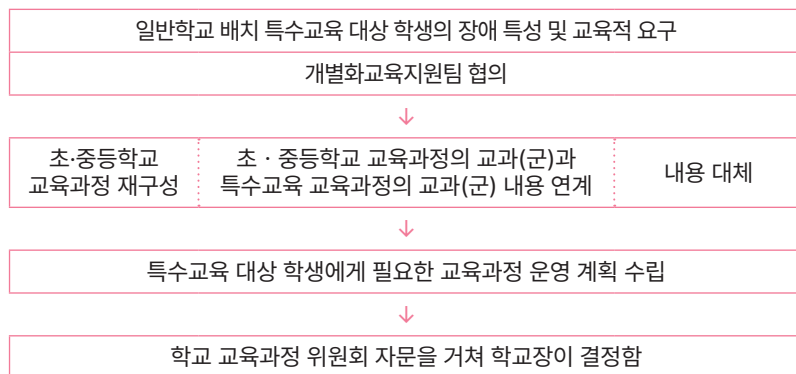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거나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을 교과 내용과 관련된 생활기능,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결정 절차(안)



Q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의 내용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교과 내용을 대체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 내용의 '연계 운영'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성취기준 도달에 필요한 내용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에서 찾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운영'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을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이나 생활기능,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과 연계한 예시

- **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초등학교 3~4학년군 성취기준 도달에 필요한 '생활 주변의 주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기본 교육과정 사회과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동네의 모습 살펴보기'에서 찾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계하여 운영함

Q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군)의 내용으로 대체한 예시

- **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학과 중학교 1~3학년군의 '도수분포표와 상대도수'의 내용을 대체하여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의 '간단한 그래프' 등의 내용으로 운영함
- ※ 내용 대체가 필요한 영역과 내용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교과 내용을 생활기능,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으로 대체한 예시

- **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의 내용을 대체하여 국어과와 관련된 생활기능의 '의사소통'영역으로 운영함
- ※ 생활기능은 일상생활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내용 대체가 필요한 영역과 내용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의 조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의뢰 → 사정 → 적합한 평가조정의 지원 결정 단계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Q 평가조정의 일반적인 절차

1. 의뢰
-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의뢰함 - 특수교사, 담임교사, 비담임 교과 교사, 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학생이 요청할 수 있음
↓
2. 사정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의뢰된 장애학생에게 평가조정의 필요성, 적합한 방법 등에 관한 사정을 실시함 - 감각, 신체, 언어 면에서 대상 학생의 현행 수준과 평가에 필요한 기술의 격차를 분석함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이 학습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에게 적합한 평가조정 방법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3. 적합한 평가조정 지원의 결정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운영, 평가 구성, 실기 평가, 점수 부여 측면 등 평가조정을 결정함 -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평가조정을 결정함

-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따르므로 소속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제공하는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지원하나요?

- ✓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행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Q 교수·학습 참여 지원 사례

지원 영역	사례
의사소통	- 구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학생: 음성출력기기,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제공 - 청각장애 학생: 수어 지도, 수어 통역 제공
행동 지원	- 행동중재, 학급 긍정 훈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보조공학	- 시각장애 학생: 확대독서기, 화면 읽기 프로그램, 점자단말기 등 - 청각장애 학생: 수어 통역 및 문자통역(속기, 자막) 서비스, FM 시스템 등 - 지체장애 학생: 음성 출력기기, 학습보조 및 이동 기기 등 - 의사소통장애 학생: 음성 출력기기, 문자 읽기 소프트웨어 등

- ※ 학교에서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개별화교육계획과 순회교육

Q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 활동 안에서 요구되는 교과 외에 다양한 생활 기술 관련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영역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생활 지원 영역 예시

- 의사소통, 신변 자립,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신체활동, 행동 지원, 여가활동, 생활 적응, 정서적 지원 등
-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를 선택하거나 통합, 또는 필요한 영역을 개발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Q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은 일상생활 활동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나요?

☑ 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일상생활 활동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는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일상생활 활동을 참고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을 생활기능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영역별 내용 요소 체계를 참고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활동의 교과용 도서를 참고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Q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고려 사항 중 '배치 환경'의 의미와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순회교육에서의 '배치 환경'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 또는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Q 배치 환경에 따른 순회교육 대상자

- 순회교육 대상자는 ①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②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③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의미함
- 이는 2020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순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함



VI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Q '별도의 교육 활동'은 무엇인가요?

- 시각 중복장애 또는 청각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교육 활동이며, 학교 교육과정과 병행하거나 교과(군)의 일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입니다.

Q 시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활동 예시

- 학생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행 교육 활동(안내 보행 또는 독립 보행 등)을 체육 교과 교육과정과 병행함
- 확대 독서기의 활용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과 또는 정보 과목의 일부 내용을 대체하여 확대 독서기 활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수행함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일상생활 활동(생활 적응-시각중복)' 등의 자료와 내용을 활용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병행하거나 교과(군)의 일부 내용으로 대체함

Q 청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활동 예시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청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 교과서 및 과목별 학생 맞춤 교수·학습 자료(수어/어휘 학습 자료,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병행하거나 교과(군)의 일부 내용으로 대체함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일상생활 활동(생활적응-청각중복)' 등의 자료와 내용을 활용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병행하거나 교과(군)의 일부 내용으로 대체함
-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인 '손담' 등을 교육 활동으로 활용함

Q '별도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 특수학교에서 시각·청각·지체 장애학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별책 2]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Q [별책 2]에 제시된 장애 영역별 별도의 교육과정

구분	공통 교육과정(초, 중)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특수교육 전문 교과
시각 장애	체육, 미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점자(초·중·고)	-	(직업·생활) 직업과 자립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이료) 해부생리 등 10개 과목
청각 장애	국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수어(초·중·고)	공통국어(청각장애)1 공통국어(청각장애)2	(직업·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지체 장애	체육	-	-	-

Q 별도의 교육 활동 예시

- 공통 교육과정의 과목(체육, 미술, 국어)과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공통 국어1, 2)은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함
- 공통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점자, 농인의 생활과 문화, 수어)과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직업과 자립,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이료 교과군) 등의 성취기준 및 교육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Q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및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별책 2]에 제시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Q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편성·운영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중감 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함
- 학생의 생활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 범위 내에서 통합 가능함
- 학급 단위 학생 맞춤형 수업의 형태로 운영 가능함

Q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편성·운영

- 고등학교에서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와 '수어'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함
- (시각장애) 특수교육 전문 교과인 직업·생활 교과(군)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직업과 자립'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고, 이료 교과(군)의 10개 과목을 편성·운영 가능함
- (청각장애) 특수교육 전문 교과인 직업·생활 교과(군)의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편성·운영 가능함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특수교육 전문 교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 (초·중)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	-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	점자	수어	직업과 자립,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 특수교육 전문 교과를 편성·운영할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며, 직업·생활 교과(군)의 '직업과 자립' 과목은 시각 중·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과목입니다.

Q '이료' 교과(군)는 어떻게 편성·운영하나요?

☑ 특수교육 전문교과 '이료'교과(군)는 시각장애학교에서만 편성·운영합니다. 이료 교과(군)는 10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3년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합니다.

Q 편성·운영 방법

- '이료'교과(군)에 제시된 10개의 과목을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
- 의학의 기초인 해부·생리, 병리, 이료 보건 과목을 우선하여 편성·운영함
- 이료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과목을 편성·운영함
- 이료실기실습의 기술 연마를 위해 수기요법에 관한 실기, 전기치료에 관한 실기, 침구에 관한 실기, 임상 실습 등을 전 학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편성·운영함
- 마지막으로 이료임상과 진단 과목을 편성하여 임상 능력을 극대화함
-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함

Q 이수 학점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함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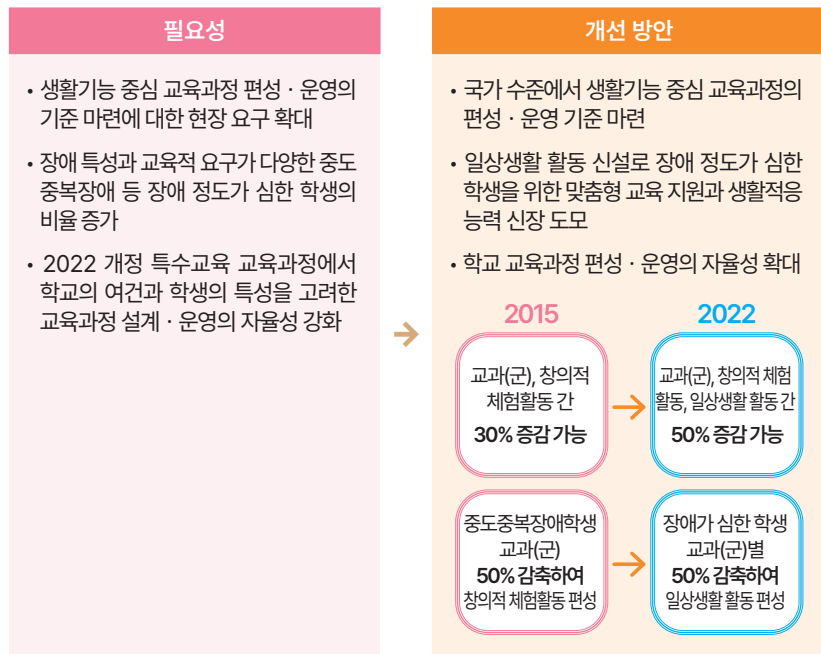
일상생활 활동

Q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해 삶과 연계된 생활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일상생활 활동의 신설 배경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생활기능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적응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함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함



Q 일상생활 활동은 모든 영역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의 여건, 학생·보호자(학부모)·교원의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Q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및 시수(학점) 편성 비율 예시

-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 예시와 같이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의 필요에 따라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시각중복, 청각중복, 지체중복) 등의 영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활기능 영역은 일상생활 활동의 관련 영역으로 편성할 수 있음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영역 및 시수(학점) 편성 비율(%)의 예시							학교 자체 개발 영역
	의사 소통	자립 생활	여가 활동	신체 활동	생활적응			
					시각 중복	청각 중복	지체 중복	
시각장애	10	10	10	10	40			20
청각장애	10	10	10	10		40		20
지적장애	30	30	20					20
지체장애	20	10	10	20			40	
정서장애	30	20		10			10	30

Q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점

- 학생·보호자(학부모)·교원의 요구를 조사해 반영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학생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 시기, 학기 당 적절한 편성 영역 수와 영역별 시수(학점) 등을 계획해야 함

Q 일상생활 활동은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에게 필요한 영역과 내용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 방법으로 영역 내 선택형, 영역 간 통합형, 일상생활 활동-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기타 학교 자체 개발형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일상생활 활동의 모듈형 교육과정 설계-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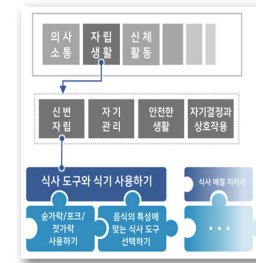
-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 체계는 생활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한 영역과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는 분절성, 독립성, 상호 관련성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육적 순서를 의미하지 않음
-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에게 필요한 생활기능 영역과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은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음

모듈형 교육과정 구분	내용
영역 내 선택형	일상생활 활동의 한 영역을 선택하고, 해당 영역의 내용 요소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함
영역 간 통합형	일상생활 활동의 서로 다른 영역과 각 영역의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운영함
일상생활 활동-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를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
기타 학교 자체 개발형	학교가 필요한 생활 기능 영역과 내용 요소를 개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함

Q 일상생활 활동의 수업 설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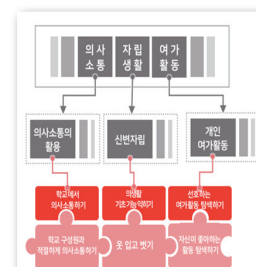
- 일상생활 활동 수업은 모듈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음

수업 설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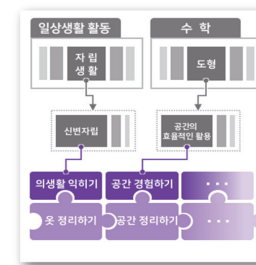
Q 영역 내 선택형 수업 설계

-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내 내용 요소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수업을 설계함
- 예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기능 수준을 고려하여 자립생활 영역의 신변자립 내용 요소 중에서 식사활동 기초 기능 익히기 활동의 '식사 도구와 식기 사용하기' 활동 예시를 선택하고 하위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수업으로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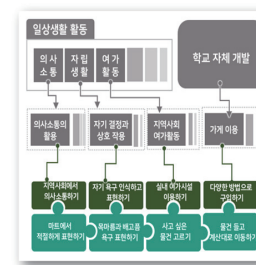
Q 영역 간 통합형 수업 설계

-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간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함
- 예시** 새 학년 초, 학생의 원활한 학급 생활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영역의 의사소통의 활용 내용 요소 중에서 '학교 구성원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자립생활 영역의 신변자립 내용 요소 중에서 '옷 입고 벗기', 여가활동 영역의 개인 여가활동 내용 요소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탐색하기' 활동을 통합하여 수업으로 설계함



Q 일상생활 활동-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수업 설계

-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를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설계함
- 예시** 자립생활 영역의 신변자립 내용 요소 중에서 '의생활 기초 기능 익히기' 활동을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도형' 영역 중에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내용 요소와 연계하여 수업으로 설계함



Q 기타 학교 자체 개발형 수업 설계

- 학교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필요한 생활기능 영역과 내용 요소를 개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모듈로 수업을 설계함
- 예시** 학교는 지역사회 적응 활동 프로그램을 일상생활 활동으로 개발하여 00년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게 이용' 내용 요소를 주제로 일상생활 활동의 의사소통, 자립생활, 여가활동 영역의 내용 요소 중에서 관련 활동을 모듈화하여 수업으로 설계함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교과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우선시되는 학생은 일상생활 활동을 편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는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 활동의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교과(군)별 시수(학점)로 증배할 수 있습니다.

Q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

- 기본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서 학급 및 학교 단위로 편제함
-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제함

Q 일상생활 활동의 시수(학점) 감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점

- 일상생활 활동 본연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만한 시수(학점)인지 검토하고 일상생활 활동의 시수(학점)가 지나치게 감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특정 교과(군)의 시수(학점)만 지나치게 증배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 수준에 적합한 교과(군)별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일상생활 활동의 시수(학점)를 감축하기 전에 일상생활 활동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거나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Q 일상생활 활동에서 학년군 통합 운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생 집단을 재편성하거나 학반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년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의 학년군 통합 운영은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 일상생활 활동의 학년군 통합 운영 방법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집단별로 학생을 재편성하고 집단별로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 (예 일상생활 활동 영역별 이동식 수업 등)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반을 편성하고 학급 단위로 일상생활 활동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
- ※ 학년군을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학생 맞춤형 수업 내용으로 일상생활 활동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VIII



고교학점제

Q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증감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점을 증감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강점과 요구 및 흥미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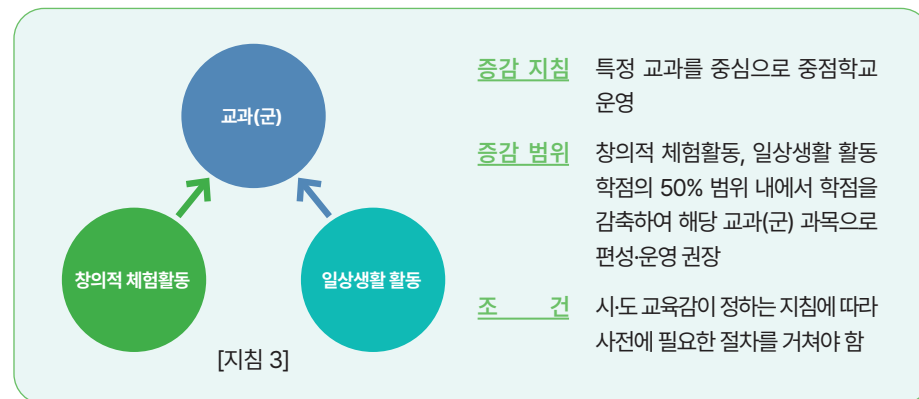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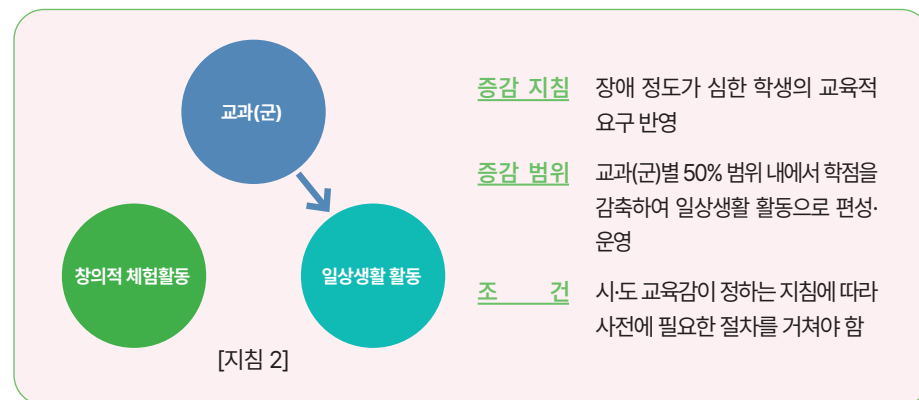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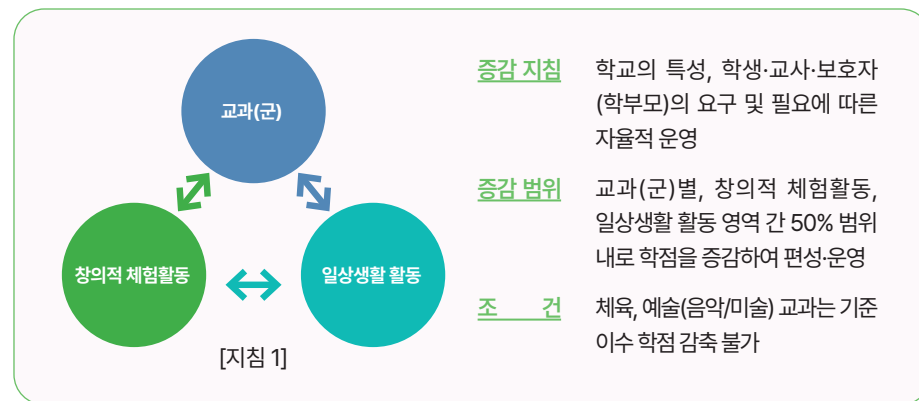
Q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학교

-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에 배당된 학점을 3가지 지침에 따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지침 1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고등학교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지침 2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1. 기본 사항)
지침 3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고등학교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Q 학점 증감의 3가지 지침

- 기준 이수 학점 증감에 관한 3가지 편성·운영 지침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함
-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영역 간 균형 있는 학습을 고려하여 과도한 증감은 지양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 전 해당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고등학교에서 1학점의 수업량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1단위 수업량이 17회(16+1)였지만,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5년 입학생부터는 1학점 수업량을 16회로 조정하였습니다.

Q 1학점 수업량의 변화

- 1학점 수업량이 17회(16+1)에서 16회로 변경되었으나, 수업일수는 기존의 190일 이상이 유지되어 학교는 학사 운영 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함
- 학교는 16회 수업 실시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진학 상담 등 학교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1학점 16회 이수'는 주중 공휴일 및 학교 행사일 등 현실적으로 16주를 지속해서 운영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임



Q 특수학교에서 '전문 교과'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 네, 특수학교에서도 전문 교과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Q 전문 교과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

- 전문 교과는 특성과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이며,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생활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이며, 직업·생활, 이료 교과(군)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전문 교과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음

Q 선택 과목 편성 시 고려할 사항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확인해야 함
- 선택 과목 편성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해야 함
- 선택 과목 편성 전 학생의 특성 및 요구와 더불어 교원 수급,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Q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 개설, 학교 밖 교육 이수 인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학교 간, 특수학교 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 단, 개설 과목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수·학습 평가와 성적 처리 등을 위해 강좌를 개설한 학교(거점 학교)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학교(참여 학교)의 교육과정(기본-기본, 선택 중심-선택 중심)이 동일인지 확인해야 함
- ※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시 외 과목 개설

- 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신청 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함 (예) 사용할 교과목의 정보,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등)
- 타 시·도, 타 학교에서 승인된 고시 외 과목은 인정도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인정도서가 없는 경우 해당 과목을 단위 학교에서 편성하려면 인정도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 타 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 등 편성 가능한 고시 외 과목은 [에듀넷 티클리어 (<https://www.edunet.net/>)]-[교육정책]-[교육과정]-[시도교육청자료]-[교육감 승인 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후 편성·운영이 가능합니다.

Q 학교밖 교육 이수 인정

-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교사·보호자(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가 인정되지 않음
- 학교 밖 교육 이수의 기록은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협의하여 과목 이수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이수 기준을 마련함
- ※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IX



학교 교육과정 지원

Q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 시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교육과정 안에서 의미 있는 통합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통합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위한 시도 교육청 지원 사항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MOU)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협력 기관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함
- 특수학교의 통합교육 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함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교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활동을 지원함
- 특수학교의 통합교육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
- 그 밖에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지원해야 함

Q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교육 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예

- **학습 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자막), 점자자료 및 인쇄물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폐쇄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의사소통 수단 등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도 자료, 시각장애 대체 학습 자료 지원, 평가 계획 및 방법의 조정 등
- **교육기관 내 이동 및 접근을 위한 지원:** 각종 이동용 보장구,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
- 교육 활동 지원인력의 제공 등

Q 정당한 편의 제공의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Q 교육청은 통합교육을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나요?

✓ 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합교육의 실행 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Q 사·도 교육청의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예시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지원: 통합교육 실행 자료 개발 및 보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예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등),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 통합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교육과정 중심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교수 모형 개발 및 운영,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통합 교육 활동 개발 및 확산 등
-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관리자를 위한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 자료 개발 및 연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을 위한 공동체 운영, 다양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장애이해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 운영 등